

1. 개정이유
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,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개정안이 '22.4.14일 시행됨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령 일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규정

2. 주요내용

제4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규정함에 따라 해당내용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고용노동부령 제 호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삭제하고, 제4조의2를 제4조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4조(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)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</u> <u>1.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할 것. 다만,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 · 조회 · 회의 · 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</u> <u>2.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</u> <u>가.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</u> <u>나. 직원연수 · 조회 · 회의 ·</u>	<u><삭 제></u>

<u>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</u> <u>다.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</u> <u>라.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개설</u> <u>3.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</u> <u>4.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,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, 퇴직연금사업자는 영 제32조에 따른 교육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</u> <u>제4조의2 (생략)</u>	<u>제4조 (현행 제4조의2와 같음)</u>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